##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7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4.

발 의 자:김윤덕・민형배・정동영

양문석 • 신영대 • 윤준병

강유정 • 박희승 • 이춘석

박홍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·출판사업,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,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·홍보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'번역 아카데미'를 운영하고 있으나,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 의 확보가 어렵고,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,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 정임.

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)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(이하"번역대학원대학"이라 한다)을 설립 할 수 있다.
  -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·교원·이수과정·학위수여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부속법령(附屬法令)에 따른다.
  - ③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·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의2(번역대학원대학의 설
	립)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
	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
	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
	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
	대학원대학(이하 "번역대학원
	대학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
	<u>있다.</u>
	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
	· 교원 · 이수과정 · 학위수여에
	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및
	그 부속법령(附屬法令)에 따른
	<u>다.</u>
	③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
	설립·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
	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
	서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
	지급할 수 있다.